

협동조합 성북신나 규약 (2015년 3월 3일 개정안)

사무국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

- ①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상근자로 직원 조합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은 조합의 중앙 거점으로서 역할하며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

제3조 (사무국장의 업무)

1.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대신하여 조합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 가. 사무국장은 이사장 및 이사회 총회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 제시 및 업무 전반을 조정 관리 감독하여야한다. 사무국장의 해임은 조합에 심대한 명예,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는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임을 할 수 없다.
 - 나. 사무국장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2. 제4조 이외 발생하는 조합운영에 대한 규약은 이사회 의결로 하며 총회에서 추후 승인받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재정)

- ① 조합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 감독한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승인 하에 은행에 예치한다.

부칙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1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2장 임원의 선출

제3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정관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선출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제4조(선거권)

총회 3일전까지 본 조합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만이 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거수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선출된 임원들의 호선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임원 입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운영)

- ① 조합은 정관 제2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이사장의 임기만료 3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

- ① 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 공고는 임기만료 24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은 공고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로부터 3일간 재공고한다.
- ② 이사장 및 임원을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선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이사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공고는 정관 제5조 공고방법에 의한다.
- ④ 제3항의 이사장 및 임원선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접수처
 2. 선출일자 및 장소
 3. 후보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 ⑤ 임원 후보등록신청자는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취소)

- ① 후보등록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등록 취소신청서를 본인 또는 본인

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제9조(선거사무 및 진행)

① 위원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의장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입후보자가 지명 신청한 참관인에게 투개표 사무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경력과 업무성적이 포함된 후보등록신청서와 이력서를 적어도 3일 이상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 사무국은 이사장 및 임원 선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을 보좌하며 선거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족수 및 선출방법)

① 이사장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하고, 임원선출은 다수 득표자 순에 따라 선출 한다.

② 후보등록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일 경우 당선된다.

제11조(당선의 선포 등)

임시의장은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총회에 공포하고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문서로 당선을 통지한다.

제12조(관련규정 적용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대의원 선출

제13조(대의원 자격 및 대의원 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총회 개최일 기준 1년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대의원 선출일 현재 가입 1년 미만의 조합원인 자

②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도 상실된다.

제14조(대의원 선출)

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조합원 중에서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출한다.
2. 대의원선출에 필요한 선거업무는 임원선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대의원 선출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대의원 보궐 선출)

정관 제19조에 따라 보궐 선출한다.

제16조(대의원의 총회 참가 확인 등)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참가 확인서를 대의원총회 10일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총회(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 총회의 대의원 선출 사무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없이 발기인 중에 담당하도록 한다.

잉여금배당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본 조합의 정관 제55조 3항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기준)

-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② 배당 가능 금액의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이월 손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 보전
 2. 법정적립금 적립금액
 3. 임의적립금 적립금액
 4. 총회에서 적립하기로 결정하는 임의적립금액
 5. 총회에서 차년도로 이월하기로 결정하는 이월이익잉여금

제5조(배당금 산정 기준)

- ① 제4조에 의거 산출된 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
 1. 출자에 대한 배당(출자배당) : 납입출자금의 30% 이하, 시중금리수준 이내
 2. 유형에 대한 배당(유형배당) : 배당금의 70% 이하, 유형 가중치(후원자조합원 1, 생산자조합원 2, 직원 조합원 3)

제6조(잉여금 배당)

- ① 제5조에 의거 산정된 배당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당한다.
 1. 자본배당 : 배당금을 자본금(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자본금에 대한 지분으로 배당한다.
 2. 현금배당 : 현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직접 배당한다.
 3. 현물배당 : 조합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배당한다.
- ② 배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총회의 결의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배당하고 그 절차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배당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자본배당, 현물배당, 현금배당의 순으로 고려한다.

제7조(배당금의 상계)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경비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조합 경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조합비의 정의)

조합비는 조합이 사업운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비의 부과와 징수에 동의하는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로서 사업의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납부한다.

제4조(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한다.
-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의 방식으로 납부한다.
- ③ 조합비는 현물 대체하여 납부할 수 없다.
- ④ 조합원은 일시적으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와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 징수된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조합비 부과금액)

- ① 조합의 조합비는 월 1만원으로 한다.
- ② 사업년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회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6조(조합비 반환 청구의 제한)

조합비는 조합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조합원이 탈퇴 및 제명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조합의 의무)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부과)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일정액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부칙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